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31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 8월 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8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가. 제안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소방취약계층의 정의(안 제2조)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시책 시행, 비용지원(안 제3조~제4조)
-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안 제5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신청 등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결정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조례제정 권고가 있어, 올해 4월말 기준 강원도내 1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평창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7. 평창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취약계층은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가장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p>「평창군 소방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평창군수 귀하</p>						